

“희망의 일자리, 행복한 국민, 함께하는 노동부”



노동부
Ministry of Labor

보도자료

▶ 자격정책과 과 장 이명로
사무관 허윤선

T E L : 02-2110-7285

E-MAIL : hys@molab.go.kr

F A X : 02-504-2413

▶ 2009. 11. 17. 배포

▶ 총 3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숙련기술 장려로 국가경쟁력 키운다

- 17일 「기능장려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,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「기능장려법」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.
-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
 - 우리나라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**기능인 홀대문화**, 숙련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**보상체계** 등으로 인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- 이에, 노동부는 현행 ‘기능장려법’을 전면 개정하여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·지원함으로써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.

-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,
 - 우선,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‘기능인’을 ‘숙련기술자’로 하고 법령칭도 ‘기능장려법’에서 ‘숙련기술장려법’으로 변경한다.
 -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사회·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
 -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
 - 숙련기술자의 Know-how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제안제도 개선, 현장발명** 등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 - 이와 같은 숙련기술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하여는 **우수 기업으로 선정·포상**하여 기업의 숙련기술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.
 - 한편 숙련기술자들의 **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**하여 이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,
 - 성공한 숙련기술자의 사례를 홍보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.
 - 또한 기존의 ‘명장’은 ‘**대한민국명장**’으로 변경,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고
 - **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**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자를 비롯한 전국민의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.
 - 그밖에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정보관리체계, 조사·연구 등 정책인프라를 확대한다.
-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“이번 법개정이 숙련기술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
 - “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, 산업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준 숙련기술자들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붙임>

기능장려법 개정안 주요내용

-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'기능'을 '숙련기술'(기능과 기술을 포괄)로 대체하고, 법명칭을 '숙련기술장려법'으로 변경
 - '기능'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숙련기술자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, 숙련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
- 4개 장(章) 신설 등 법 구성 및 정책 체계화
 - 국가·지자체의 책무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명시
 -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채용 관련 조항 신설
 -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(조사·연구, 정보관리체계 구축, 국제협력 등) 신설
-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기반 확대
 - 사업체의 보상체계 변경(숙련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도입 등) 및 숙련기술 향상 촉진 활동(제안제도, 학습조직화, 현장발명촉진 등) 지원 신설
 - 숙련기술자단체 결성 및 활동 지원(숙련기술 향상 촉진 사업 참여시 비용지원 등)
- 기존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내실화
 - 명장제도 개선('대한민국명장'으로 변경, 품위유지의무 신설 등)
 -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근거 마련(국제기능올림픽 국내 개최, 민간기능경기대회 비용 지원 등)
 - 수행실적이 미미하거나 타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